

2016년 1분기 평생교육정책관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

「학교법인 하나학원」 과 「우리시」 를 당사자로 한 장학금 지급 청구 민사 소송에서 일부 패소함에 따라 연 15%의 지연손해금 지급에 대한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판결에 따른 원리금을 예비비로 지급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립니다

□ **보고근거 : 서울시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 제3항**

□ **예비비 사용개요**

○ **사용 승인액 : 514,315,000원**

○ **지출금액 : 512,864,370원**(지출일 : '16. 2. 5.)

○ **예산과목**

- 평생교육정책관, 학교지원및우수인재양성, 창의적우수인재양성, 서울장학사업추진, 배상금 등(305-01)

○ **사용사유**

- '16년 예산편성 당시 소송이 계류중에 있어 별도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으며,
- 판결일 이후부터 발생하는 연15%의 이자(1일 207,122원)에 대한 시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예비비를 사용하여 지급

하나고 관련 장학금 지급 민사소송 1심 판결 결과

◆ **판결선고 : 2016. 2. 3(수) 10:00(서울중앙지방법원 351호 법정)**

◆ **판결내용(요약)**

- 우리시에서 '15년 기 지급한 144백만원을 제외한 504백만원의 지급과
- '14년 ~ '15년 미지급 대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연 5%, 판결일 이후 지연손해금 연 15%의 지급을 주문

※ 우리시 항소제기('16. 2.17) 2심 진행중